군민이 신뢰하는 든든한 의회

2025. 9. 17.(수)
제332회 임시회

심 사 결 과 보 고 서

완 도 군 의 회

행정자치위원회

□ 심사경과

의안번호	제 출 일	제 출 자	회 부 일	상 정 일	심사결과
제3460호	2025. 8. 22.	허궁희 의원	2025. 9. 8.	2025. 9. 8.	원안가결
제3461호	2025. 8. 27.	완 도 군 수	2025. 9. 8.	2025. 9. 8.	원안가결
제3462호	2025. 8. 27.	완 도 군 수	2025. 9. 8.	2025. 9. 8.	원안가결
제3463호	2025. 8. 27.	완 도 군 수	2025. 9. 8.	2025. 9. 8.	원안가결
제3464호	2025. 8. 27.	완 도 군 수	2025. 9. 8.	2025. 9. 8.	원안가결
제3465호	2025. 8. 27.	완 도 군 수	2025. 9. 8.	2025. 9. 8.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3460호】

완도군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 8. 22. 허궁희 의원

나. 회부일자 : 2025. 9. 8.

다. 상정일자 : 2025. 9. 8.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노인복지법」 제4조에 근거하여 완도군에 거주하는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함.

나.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정의 및 지급대상(안 제2조, 안 제3조)
- 지급액 및 지급기준(안 제4조, 안 제5조)
- 신청안내 및 지급신청 등(안 제6조, 안 제7조)
- 지급방법 및 지급제외(안 제8조, 안 제9조)
- 환수조치 및 대상자 관리(안 제10조, 안 제11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완도군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으로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의 안녕과 장수 기원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5. **토론요지**: 기재생략

6. **심사의견**: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붙임 조례안 1부. 끝.

완도군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근거하여 완도군에 거주하는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축하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3. “지급기준일”이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완도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제4조(지급액) 장수축하금은 장수노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5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제5조(지급기준) ① 장수축하금은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② 지급기준일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수노인이 전입 등의 사유로 제3조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는 전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을 지급기준일로 본다.

제6조(신청안내) 읍·면장은 제3조의 지급대상자에게 100세에 이르는

날이 속한 달의 전월 말까지 장수축하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신청 등) ① 장수축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장수노인은 100세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별지 1호 서식의 신청서를 1년 이내에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소지한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2.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3.「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③ 읍면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급대상자의 수급 자격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

제8조(지급방법) ①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생년월일, 주소,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 등에 확인하여 장수축하금 신청일부타 5일이내에 접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장수축하금을 신청한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대상자에 지역화폐를 지급 하여야 한다.

③ 장수축하금은 모바일 또는 지류 형태의 지역화폐로 대상자에게 지

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피성년후견 또는 피한정후견 선고를 받은 경우

2. 치매 또는 거동불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령이 불가한 경우

제9조(지급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급대상자가 지급기준일 현재 사망하거나 주민등록 말소, 완도군 외로 전출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장수축하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3. 장수노인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수축하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제10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수축하금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11조(대상자 관리) 군수는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자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7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제3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민등록상 101세 이상 어르신은 100세로 보고 제4조에 규정된 금액의 장수축하금을 지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장수축하금 지급신청서

지급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 ]남 [ ]여
	주 소	(연락처:)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성 별	[ ]남 [ ]여
	주소	(연락처:)				
	대상자와의 관계	□본인 □기타( )				
1) 업무관련 정보조회		□동의 □부동의 1) 전자정부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민원사항 등의 처리 및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행정정보				

「완도군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축하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완도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위 임 장

□ 위임한 자(본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위임하는 사유			

□ 위임받은 자(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1] 업무관련 정보조회	□동의 □부동의
연 락 처		지급 대상자와의 관계	

[1] 전자정부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민원사항 등의 처리 및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행정정보

「완도군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위 위임받은 자(대리인)에게 장수축하금 지급신청을 위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위임한 자(본인) : (인)

※ 확인자료 : 위임한 자(본인)와 위임받은자(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

【별지 제3호 서식】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

(　　읍면)

일련번호	지급대상자			신청일자	지급일자	비고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의안번호 제3461호】

완도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 8. 27. 완도군수

나. 회부일자 : 2025. 9. 8.

다. 상정일자 : 2025. 9. 8.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완도군 공모사업 사전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정비하여 군정 발전을 위한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군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의 선정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완도군 공모사업 사전 심의위원회 구성 정비(안 제7조제2항제3호)
  - 해양치유담당관 → 관광실장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완도군 공모사업 사전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현행 직제 체계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5. **토론요지**: 기재생략

6. **심사의견**: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붙임 조례안 1부. 끝.

완도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관광실장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생 략)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2. (생 략) 3. 해양치유담당관 4.·5. (생 략) ③ ~ ⑤ (생 략)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1.·2. (현행과 같음) 3. 관광실장 4.·5.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의안번호 제3462호】

완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 8. 27. 완도군수

나. 회부일자 : 2025. 9. 8.

다. 상정일자 : 2025. 9. 8.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위원 선정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주민자치위원 선정심의위원회 조항 신설(안 제17조의2)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구성하여 주민자치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선정심의위원회를 두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5. **토론요지**: 기재생략

6. **심사의견**: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붙임 조례안 1부. 끝.

완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 (주민자치위원 선정심의위원회) ① 읍·면장은 주민자치위원을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읍·면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읍·면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센터 운영 또는 주민자치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
2. 지역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및 지역사회 지도자
3. 지역발전에 관심이 있고 덕망이 있는 사람

④ 위원회는 필요시 구성하고,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7조의2 (주민자치위원 선정심의위원회) ① 읍·면장은 주민자치위원을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읍·면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읍·면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센터 운영 또는 주민자치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 2. 지역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및 지역사회 지도자 3. 지역발전에 관심이 있고 덕망이 있는 사람 ④ 위원회는 필요시 구성하고,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의안번호 제3463호】

완도군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 8. 27. 완도군수

나. 회부일자 : 2025. 9. 8.

다. 상정일자 : 2025. 9. 8.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의거, 위촉직 위원 수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명시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조사 결과에 따라 위원회 비상설화 규정을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촉직 위원 성별 균형 단서 조항 추가(안 제4조제2항)
- 위원회 당연직 위원 현행화(안 제4조제3항)
- 위원회 비상설화 규정 추가(안 제4조제4항)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상위법에 맞게 개선하여 위원회의 운영을 내실있게 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5. **토론요지**: 기재생략

6. **심사의견**: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붙임 조례안 1부. 끝.

완도군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한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위원회 설치)”를 “(위원회 설치 및 구성)”으로 한다.

제4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제3항 중 “건축업무 담당과장, 문화관광업무 담당과장, 한옥지원사업 담당과장”을 “민원봉사과장,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위원회 설치) ① (생 략)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건축업무 담당과장, 문화관광업무 담당과장, 한옥지원사업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가 추천한 의원 및 고건축·한옥·문화·예술·역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신 설>	③ ---------- 민원봉사과장, 문화예술과장----------.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임기) <삭 제>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삭 제>
③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군수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삭 제>

【의안번호 제3464호】

완도군 노인 목욕비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 8. 27. 완도군수

나. 회부일자 : 2025. 9. 8.

다. 상정일자 : 2025. 9. 8.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노인에 대한 사기진작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 목욕비, 이·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지원대상, 지원기준(안 제1조 ~ 안 제3조)
- 지원신청 및 결정, 지원방법(안 제4조, 안 제5조)
- 카드시스템 운영·위탁, 카드 사용. 사용료 정산(안 제6조 ~ 안 제8조)
- 가맹점 지정 및 취소, 가맹점 준수사항(안 제9조 ~ 안 제10조)
- 환수처리, 지도·감독(안 제11조 ~ 안 제12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노인 목욕비와 이미용비 지원에 대한 오남용을

방지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내실있게 규정하여 완도군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건강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해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5. **토론요지**: 기재생략

6. **심사의견**: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붙임 조례안 1부. 끝.

완도군 노인 목욕비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완도군 노인 목욕비 등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완도군 노인 목욕비,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완도군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사기진작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 목욕비, 이·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① 노인 목욕비, 이·미용비(“목욕비 등”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70세 이상 군민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지원기준) ① 노인 목욕비 등은 현금지원이 아닌 목욕업소, 이·미용 업소의 이용요금 상당의 바우처전용카드(이하 “바우처카드” 라 한다)로 지원하며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이 부담한다.

② 바우처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바우처카드 포인트로 지원한다.

③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전입, 연령 도래, 신규 신청 등의 사유로 최초 지원신청을 할 경우 신청한 달로부터 지원하며 이후 분기

별로 지원한다.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바우처카드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읍·면장이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일괄 조사·결정하고 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조(지원방법) ① 읍·면장은 결정된 지원대상에게 바우처 카드를 발급·배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바우처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제6조(카드시스템 운영·위탁) ① 군수는 바우처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바우처카드 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사무를 전문업체(이하“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바우처카드의 요금 정산은 군수와 수탁자 간 체결한 위·수탁협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카드 사용) ① 바우처지원은 관내 목욕, 이·미용 업소 중 목욕비 등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업소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② 지원대상은 카드를 양도할 수 없으며, 가맹점은 지원대상 본인임

을 확인 후 결제해야 한다.

제8조(카드 사용료 정산) ① 군수는 매월 3일 업체로부터 바우처카드 사용정산 내역을 받아 가맹점에 7일 이내 이용금액를 지원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카드 수수료는 군수가 부담한다.

제9조(가맹점 지정 및 취소) ① 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가맹점 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가맹점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해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변경·해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0조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10조(가맹점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바우처 결제를 거절하거나 바우처카드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용역의 제공 없이 바우처카드를 결제하는 행위

3.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바우처카드를 결제하는 행위

② 그 밖에 군수와 계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준수해야 한다.

제11조(환수처리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지원 대상을 제한하거나, 제8조에 따른 카드 사용료 정산요금 환수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바우처 지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목욕비 등을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12조(지도·감독) 군수는 가맹점, 카드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전문업체 등이 사업 목적대로 적정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지도·감독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4조 및 제5조 관련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table>
<tr><td colspan="4">☐ 신규 ☐ 재발급</td><td>처리기한
즉시</td></tr>
<tr><td rowspan="2">신청인</td><td>성 명</td><td></td><td>생년월일</td><td></td></tr>
<tr><td>주 소</td><td></td><td>연락처</td><td></td></tr>
<tr><td rowspan="2">재발급 구분</td><td>사 유</td><td colspan="3">☐ 재발급 [분실( ), 훼손( ), 기타( )]</td></tr>
<tr><td>카드반납</td><td colspan="3">여 / 부 [*훼손인 경우는 카드 반드시 반납해야함]</td></tr>
<tr><td colspan="2">※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사항 체크)</td><td colspan="3">1. 완도군 관내 주민등록 : 여 · 부
2. 주민등록상 70세이상 : 여 · 부
3. 노인복지시설 등 입소자 : 여 · 부</td></tr>
</table>

상기와 같이 노인 목욕비 지원사업의 바우처카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또는 서명)

완 도 군 수 귀하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완도군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 및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 · 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생년월일,주소, 성별,연락처	지원대상자 선정, 바우처카드 발급 지원	바우처 수혜기간 종료일부터 5년

※귀하는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 받는자	수집·이용 항목	수집 · 이용 목적	보유기간
바우처카드 제작 및 시스템운영업체	성명,생년월일, 주소,성별,연락처	노인건강증진비 바우처카드 제작 및 시스템 운영·관리	바우처 수혜기간 종료일부터 5년

※귀하는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바우처카드 발급 및 사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완 도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제9조 관련

완도군 노인 목욕 및 이·미용 바우처 가맹점 신청서

<table>
<tr><td>업소명</td><td colspan="2"></td><td>대표자</td><td></td></tr>
<tr><td>주소</td><td colspan="2"></td><td>연락처</td><td></td></tr>
<tr><td>카드
단말기 명</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2">입금처</td><td>예금주</td><td></td><td>금융기관</td><td></td></tr>
<tr><td>계좌번호</td><td colspan="3"></td></tr>
</table>

「완도군 노인목욕 및 이·미용 바우처 지원 조례」 제9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완도군 노인목욕 및 이·미용 바우처 가맹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서명)

완 도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없을 시 업소 신고필증 사본)
2. 통장 사본

〔별지 제3호 서식〕 제9조 관련

완도군 노인목욕 및 이·미용 바우처카드 가맹점 등록 [변경, 해지] 신청서

<table>
<tr><td rowspan="5">신청인</td><td rowspan="2">대표자</td><td>성 명</td><td colspan="3">(남, 여)</td></tr>
<tr><td>생년월일</td><td colspan="3"></td></tr>
<tr><td>상 호</td><td></td><td>사업자
등록번호</td><td colspan="2"></td></tr>
<tr><td>업 종</td><td></td><td colspan="3">전화번호 :
(휴대폰 :)</td></tr>
<tr><td>사업장
소재지</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2">신청
내용</td><td colspan="2">변 경 전</td><td colspan="3">변 경 후</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3"></td></tr>
<tr><td>변경
(해지)
사유</td><td colspan="5"></td></tr>
</table>

「완도군 노인목욕 및 이·미용 바우처 지원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완도군 노인목욕 및 이·미용 바우처 가맹점 등록(변경, 해지)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

구비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변경신청시 해당

【의안번호 제3465호】

완도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 8. 27. 완도군수

나. 회부일자 : 2025. 9. 8.

다. 상정일자 : 2025. 9. 8.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조사 결과에 따라 비상설화 위원회로 변경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부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촉직 위원 성별 균형 단서 조항 추가(안 제3조제1항)
- 협의회 비상설화 규정 신설(안 제3조제4항)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상위법에 맞게 개선하여 위원회의 운영을 내실있게 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5. **토론요지**: 기재생략

6. **심사의견**: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붙임 조례안 1부. 끝.

완도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①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안건을 상정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서 신설>	제3조(구성) ① ----------.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 군의회의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삭 제>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제7조(회의) ①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안건을 상정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임시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삭 제>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산업건설위원회

□ 심사경과

의안번호	제 출 일	제 출 자	회 부 일	상 정 일	심사결과
제3466호	‘25. 8. 22.	김양훈 의원	‘25. 9. 8.	‘25. 9. 8.	원안가결
제3467호	‘25. 8. 20.	박병수 의원	‘25. 9. 8.	‘25. 9. 8.	원안가결
제3468호	‘25. 8. 27.	완 도 군 수	‘25. 9. 8.	‘25. 9. 8.	원안가결
제3469호	‘25. 8. 27.	완 도 군 수	‘25. 9. 8.	‘25. 9. 8.	원안가결
	이	하	빈	칸	

【의안번호 제3466호】

완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 8. 22. 김양훈 의원

나. 회부일자: 2025. 9. 8.

다. 상정일자: 2025. 9. 8.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완도군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함

나.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정의 및 군수의 책무(안 제2조, 안 제3조)
- 지역건설업체의 책무(안 제4조)
- 실태조사 및 지역건설산업체 보호(안 제5조, 안 제6조)
- 완도군민 고용과 지역내 생산자재·장비의 사용(안 제7조)
- 포상 및 재정지원(안 제8조)
- 지역건설산업 안전·보건 및 재해예방(안 제9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지역건설업체의 참여 확대를 통해 예산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5. 토론요지: 기재생략

6. 심사의견: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붙임 조례안 1부. 끝.

완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활동하는 건설업과 자재생산 또는 유통,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에, 개인은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 관내에 두고 건설산업을 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고, 부실 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 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다른 지역의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하며, 인허가, 착공 전·후 및 준공 등의 과정별 실태를 파악하여 각종 건설공사에서는 완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고용하고 군내 생산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제4조(지역건설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 설계·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역건설산업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해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분석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역건설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2. 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3. 하도급 적정 여부에 관한 사항
4. 성실 설계·시공 여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실태조사를 하려면 실태조사 7일 전까지 일시·사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조사대상 건설산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실태조사 후 그 분석 결과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역건설산업체 보호) ① 군수는 건설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시공참여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관급공사에 있어 원도급자가 지역 하도급업체에 하도급 대금지급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하여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또는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서를 군 경리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공사비 미수금으로 인한 지역건설업체의 경영난 초래를 사전 예방하도록 노력한다.

③ 군수는 사업장 주소만 등록하고 실제 근무 인력이 없거나, 장비·물품·관련 시설 등 사업 수행 기반이 없는 회사는 공공계약을 배제할 수 있다.

제7조(완도군민 고용과 지역 내 생산자재・장비의 사용) ① 군수는 군민 고용과 지역자재 구매 및 사용을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역 내 생산자재를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및 재정지원) 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지역건설업체와 건설업자를 자랑스러운 완도건설산업체와 건설인으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랑스러운 완도건설산업체와 건설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에 기여한 개인이나 지역건설 산업체

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공이 많은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랑스러운 완도건설산업체와 건설인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수립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지역건설산업 안전·보건 및 재해예방) 군수는 지역건설노동자의 안전·보건과 재해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

1. 안전·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홍보·교육

2. 건설현장 안전사고 발생 시 발생원인 등의 기록·보관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번호 : 제3467호】

완도군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8. 20. 박병수 의원

나. 회부일자: 2025. 9. 8.

다. 상정일자: 2025. 9. 8.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작물 전환 및 재배 확대를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계획(안 제4조)
- 지원사업(안 제5조)
-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위원회 설치(안 제6조)
- 교육훈련(안 제7조)
- 소비촉진 등(안 제8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위기후변화로 인한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 창출 및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5. **토론요지**: 기재생략

6. **심사의견**: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붙임 조례안 1부. 끝.

완도군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작물 전환 및 재배 확대를 지원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기후변화대응 작물”이란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작물을 말한다.
3. “농업인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 같은 법 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인 등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시책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계획) ① 군수는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다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경우, 육성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기후변화 대응 작물 조사·재배 등 현황

3. 기후변화 대응 작물 재배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 및 교육훈련 방안

4.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등 지원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작물 재배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농업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후변화대응 작물 신규사업 발굴 및 육성

2. 기후변화대응 작물 품종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3. 기후변화대응 작물 종자, 종구, 종묘 등 구매지원

4.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재배 시설 보급

5. 기후변화대응 작물 재배 농가 교육 및 컨설팅

6.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생산·가공·유통 등 기반 구축

7.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한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8. 그 밖에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재배·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완도군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육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의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농업인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 및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완도군 농업·농촌 및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 및 완도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7조(교육훈련) ① 군수는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재배 관련 지식과 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소비촉진 등) 군수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완도군에서 생산한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이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번호 : 제3468호】

완도군 문학상 운영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8. 27. 완도군수

나. 회부일자: 2025. 9. 8.

다. 상정일자: 2025. 9. 8.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완도군의 역사·문화·자연 등을 소재로 한 문학 창작 활동 장려와 문학상의 효율적인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주최 및 주관, 수상자의 요건(안 제1조 ~ 안 제4조)
- 시상 및 시상금, 운영위원회 설치, 구성, 임기(안 제5조 ~ 안 제7조)
-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해촉, 위원장의 직무(안 제8조 ~ 안 제10조)
- 회의, 운영규정, 심사위원회 설치, 구성, 기능(안 제11조 ~ 안 제14조)
- 수상후보자 선정, 이중 시상의 금지(안 제15조 ~ 안 제16조)
- 기록보존, 실비보상, 시행규칙(안 제17조 ~ 안 제19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지역 문학인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완도군 문학 발전과 지역문화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역량있는 작가를 발굴·시상하는 문학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5. **토론요지**: 기재생략

6. **심사의견**: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붙임 조례안 1부. 끝.

완도군 문학상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문학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역량 있는 작가에게 수여하는 완도군 문학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학”이란 「문학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예술작품을 말한다.
2. “문학인”이란 「문학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주최 및 주관) 완도군 문학상(이하 “문학상”이라 한다)은 완도군이 주최하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완도군 문학상 운영위원회가 선정하는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수상자의 요건) 문학상의 수상대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문학 정신을 함양하고 창작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역량 있는 작가로 한다.

제5조(시상 및 시상금) 시상은 창작 부문에 한하여 장르 구분 없이 시상하며, 시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단, 심사결과 수상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문학상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도군 문학상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학상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심사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3. 수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성별을 고려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학상 운영 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완도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 문학 관련 단체 임원

3. 문학 분야 관련 교수

4. 그 밖의 문학 부문에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학상 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

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경우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운영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최고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심사위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설명・질의 및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제13조(심사위원회 설치) 운영위원회는 완도군 문학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14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운영위원장은 문학 부문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사위원의 임기는 해당연도에 한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사기준과 심사방법 설정

2. 수상 후보자 선정

3. 그 밖의 문학상 심사에 필요한 사항

⑤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수상후보자 선정) ① 심사위원장은 예비심사와 본 심사를 구분하여 심사하고, 심사결과 및 심사평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상 후보자를 선정한

다.

1. 작품의 문학성

2. 문학발전에 기여도가 큰 작품

③ 운영위원회는 심사위원회 명단을 수상자 발표와 함께 공개한다.

제16조(이중 시상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문학상을 수상했던 사람은 동일 부문으로는 재시상하지 않는다.

제17조(기록보존) 군수는 문학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수상작품,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대장을 갖추어 놓고 이를 보존해야 한다.

제18조(실비보상) ① 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에게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번호 : 제3469호】

완도해조류박람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8. 27. 완도군수

나. 회부일자: 2025. 9. 8.

다. 상정일자: 2025. 9. 8.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해조류박람회 추진을 위해 신규로 조직된 부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내실있고 성공적인 해조류박람회 추진을 위해 완도해조류박람회 추진위원회 구성인원을 변경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추진위원회 구성인원 변경(안 제6조제1항)

-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5명 이내의 위원

- 간사 직책 현행화(안 제6조제4항)

- 간사는 해조류 박람회 추진팀장으로 한다 → 박람회기획팀장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완도해조류박람회 추진위원회 구성인원 변경과 간사 직책 현행화를 위해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5. 토론요지: 기재생략

6. 심사의견: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붙임 : 조례안 1부. 끝.

완도해조류박람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해조류박람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20명”을 “2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해조류 박람회 추진팀장”을 “박람회기획팀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③ (생 략)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조류 박람회 추진팀장으로 한다. ⑤ (생 략)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25명----------. ②·③ (현행과 같음) ④ ----------박람회 기획팀장----------. ⑤ (현행과 같음)